신남방

말레이시아 MALAYSIA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405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419
03. 비관세장벽 현황 423
04. 수출 애로사항 432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434

2023년 한눈에 보이는

국가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현황

2023년 한눈에 보이는
말레이시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용어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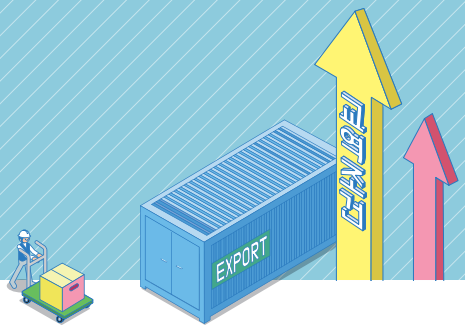

비관세장벽

-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함
- 비관세장벽은 각 국가가 타국의 상품 생산자 및 수출자에게 규제 준수 및 비용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및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체제 내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됨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첨가물,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유발 매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임
- (예시) 육제품 생산 시 호르몬 및 항생제 사용 제한, 가공식품에 특정 첨가물 사용 제한 조치 등

TBT(기술 장벽)

-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 (예시) 미국 유아용 조제분유 라벨링 규정, 콜롬비아 가공식품 앞면 영양표시 의무 규정 시행, 나이지리아 트랜스지방 첨가요건 및 라벨 표시 강화 방안 식품 규제 발표 등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1) 2)

1. 시장개요

시장규모

- 2022년 식품 시장규모는 490억 달러(한화 약 64조 1,900억 원)로 전년 대비 7.5% 증가함
  - 전체 식품시장에서 신선식품의 비중은 54.5%, 가공식품은 45.5%로 구분됨
    * 신선식품 품목 중 육류가 133억 달러(한화 약 17조 4,230억 원)로 가장 큰 비중(27.1%)을 차지하며, 뒤이어 채소류(10.6%), 과일 및 견과류(7.6%), 유제품 및 낙농품(7.6%), 유지류(1.6%) 순임
    * 가공식품 품목 중 시장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스낵류로 92억 달러(한화 약 12조 520억 원)이며, 뒤이어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편의식품, 소스 및 향신료, 스프레드 및 당류, 영유아용 식품, 펫푸드 순임

식품 시장규모(2018~2022)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39.0	40.1	40.6	45.6	49.0	100.0	7.5
신선식품	21.6	21.9	22.0	24.6	26.7	54.5	8.5
– 육류	11.3	11.1	10.9	12.3	13.3	27.1	8.1
– 채소류	4.0	4.2	4.3	4.8	5.2	10.6	8.3
– 과일 및 견과류	2.9	3.0	3.1	3.4	3.7	7.6	8.8
– 유제품 및 낙농품	2.8	3.0	3.1	3.4	3.7	7.6	8.8
– 유지류	0.6	0.6	0.6	0.7	0.8	1.6	14.3
가공식품	17.4	18.2	18.6	21.0	22.3	45.5	6.2
– 스낵류	6.9	7.3	7.5	8.5	9.2	18.8	8.2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5.6	5.8	6.0	6.7	6.9	14.1	3.0
– 편의식품	2.2	2.3	2.3	2.6	2.8	5.7	7.7
– 소스 및 향신료	1.0	1.1	1.1	1.2	1.3	2.7	8.3
– 스프레드 및 당류	1.0	1.0	1.0	1.2	1.2	2.4	0.0
– 영유아용 식품	0.5	0.5	0.5	0.6	0.6	1.2	0.0
– 펫푸드	0.2	0.2	0.2	0.2	0.3	0.6	50.0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1) 환율 : 1달러=1,310.00원(2024년 1월 4일, 매매기준율 기준)
2) '22년 기준 시장규모, 수출입현황 등의 통계자료(출처 : STATISTA, ITC Trade Map 등)

소비인구 및 특성

- 2022년 기준 전체 인구 수는 3,390만 명으로, 전년과 비슷함
  - 연령대 별 인구 수는 균등한 편이며 55세 이상 중장년층의 비중은 전체 인구의 약 23.9% 수준임
  - 여성 인구 수는 1,660만 명(약 49.0%), 남성 인구수는 1,730만 명(51.0%)으로,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많음

- 2022년 가구 수는 720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평균 6,900달러(한화 약 904만원) 규모임
  - 2022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는 2021년 대비 7.8% 증가함
  -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 중 식품에 대한 지출 규모는 약 27.5%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5.6% 증가함

-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1,470.9달러(한화 약 196만 원)로 집계됨
  - 연간 신선식품 소비액은 1인당 801.8달러(한화 약 105만 원) 수준으로 전체 식품 소비액의 54.5%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6.4% 증가함
  - 가공식품 소비액은 총 669.1달러(한화 약 88만원)이며, 스낵류가 277.2달러(한화 약 36만원)로 가장 큰 비중(18.8%)을 차지함

1인당 식품 소비액(2018~2022)

(단위 :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1,232.0	1,252.7	1,258.8	1,393.2	1,470.9	100.0	5.6
신선식품	683.8	683.5	679.1	753.9	801.8	54.5	6.4
– 육류	358.3	345.8	335.8	375.1	399.6	27.2	6.5
– 채소류	126.4	131.2	133.4	147.3	157.0	10.7	6.6
– 낙농품 및 난류	90.3	93.7	95.4	105.1	111.5	7.6	6.1
– 과일 및 견과류	89.8	93.2	94.7	104.6	110.7	7.5	5.8
– 유지류	19.0	19.6	19.8	21.8	23.0	1.6	5.5
가공식품	548.2	569.2	579.7	639.3	669.1	45.5	4.7
– 스낵류	217.7	227.7	233.1	259.3	277.2	18.8	6.9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76.5	182.7	185.1	203.9	207.8	14.1	1.9
– 편의식품	68.9	71.3	72.2	79.6	84.2	5.7	5.8
– 소스 및 향신료	32.2	33.3	33.7	37.0	39.2	2.7	5.9
– 스프레드 및 당류	31.3	32.0	32.2	35.1	35.1	2.4	0.0
– 영유아용 식품	15.7	16.1	16.7	17.3	18.1	1.2	4.6
– 펫푸드	5.9	6.1	6.7	7.1	7.5	0.5	5.6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 신선식품 주요 품목 중 1인당 소비량이 가장 큰 품목은 채소류로 총 74.3kg이며, 전년 대비 3.5%의 증가율을 보임

  * 육류 소비량은 44.8kg, 낙농품 35.9kg, 과일 및 견과류 30.6kg, 유지류 3.7kg 수준으로 소비됨

- 가공식품 중에서는 2022년 1인당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소비량이 123.5kg으로 가장 높으며, 전년 대비 0.6% 감소함

  * 뒤이어 스낵류 48.5kg, 편의식품 18.5kg, 소스 및 향신료 12.3kg, 스프레드 및 당류 11.6kg, 펫푸드 4.4kg, 영유아용 식품 1.0kg 순으로 집계됨

1인당 식품 소비량(2018~2022)

(단위 : kg,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대비 증감률
신선식품	- 채소류	65.0	67.7	69.3	71.8	74.3	3.5
	- 육류	41.9	41.4	41.5	43.6	44.8	2.8
	- 낙농품	31.1	32.3	33.4	34.6	35.9	3.8
	- 과일 및 견과류	27.8	28.4	29.0	29.8	30.6	2.7
	- 유지류	3.3	3.4	3.5	3.6	3.7	2.8
가공식품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15.1	118.4	120.8	124.2	123.5	-0.6
	- 스낵류	42.2	43.9	45.1	46.8	48.5	3.6
	- 편의식품	16.7	17.2	17.5	18.0	18.5	2.8
	- 소스 및 향신료	11.1	11.5	11.7	12.0	12.3	2.5
	- 스프레드 및 당류	11.4	11.6	11.8	12.1	11.6	-4.1
	- 펫푸드	4.2	4.4	4.4	4.3	4.4	2.3
	- 영유아용 식품	0.9	0.9	0.9	1.0	1.0	0.0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2. 수출입현황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2년 말레이시아의 농식품 수출액은 334억 2,699만 8,000달러(한화 약 43조 7,894억 원)로 전년 대비 16.4% 증가함

  - 주요 수출국은 인도(11.1%), 중국(10.4%), 싱가포르(8.6%)이며, 한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2.1%로 집계됨

    * 인도로의 수출액은 36억 9,735만 8,000달러(한화 약 4조 8,435억 원)로 집계되며, 전년도 수출규모 대비 4.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對중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34억 6,156만 2,000달러(한화 약 4조 5,346억 원), 對싱가포르 수출액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28억 7,189만 3,000달러(한화 약 3조 7,622억 원)로 집계됨

    * 한국으로의 농식품 수출액은 7억 741만 2,000달러(한화 약 9,267억 원)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28.6%의 큰 증가율을 보임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20,325,136	19,845,927	21,440,402	28,705,362	33,426,998	100.0	16.4	13.2
1	인도	1,411,407	2,119,946	1,795,943	3,880,972	3,697,358	11.1	-4.7	27.2
2	중국	2,012,393	2,206,233	2,714,386	3,106,595	3,461,562	10.4	11.4	14.5
3	싱가포르	2,198,346	2,333,302	2,332,265	2,630,540	2,871,893	8.6	9.2	6.9
4	네덜란드	897,641	717,278	1,169,983	1,844,391	1,873,067	5.6	1.6	20.2
5	필리핀	845,397	740,127	832,904	1,070,452	1,467,095	4.4	37.1	14.8
6	일본	745,904	778,048	747,617	959,773	1,306,128	3.9	36.1	15.0
7	튀르키예	574,016	590,253	632,694	1,009,267	1,278,679	3.8	26.7	22.2
8	케냐	161,816	120,318	356,197	861,058	944,271	2.8	9.7	55.4
9	사우디아라비아	395,115	252,002	424,056	542,442	891,236	2.7	64.3	22.6
10	베트남	752,688	705,791	632,837	886,766	889,840	2.7	0.3	4.3
14	한국	378,051	358,783	402,738	550,184	707,412	2.1	28.6	17.0

* 출처 : ITC Trade Map(www.trademap.org)

- 주요 수출 품목은 팜유 및 식물성 지방 분획물 등으로 나타남
  * 팜유 기타 품목이 전체 수출 품목 중 37.4%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35.1%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팜유 기타 품목 외에도 팜유(조유)(13.5%), 식물성 지방 분획물(8.7%), 동·식물성 유지(2.8%)가 상위 수출 품목에 해당함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20,325,136	19,845,927	21,440,402	28,705,362	33,426,998	100.0	16.4	13.2
1	팜유 기타	6,735,688	6,469,974	6,850,934	9,257,741	12,507,484	37.4	35.1	16.7
2	팜유(조유)	1,939,482	1,862,350	2,934,139	4,954,295	4,498,802	13.5	-9.2	23.4
3	식물성 지방 분획물	1,656,644	1,497,887	1,640,497	2,265,546	2,898,832	8.7	28.0	15.0
4	동·식물성 유지	132,332	202,369	359,163	741,950	942,520	2.8	27.0	63.4
5	조제식료품	645,638	675,922	679,047	811,791	922,535	2.8	13.6	9.3
6	팜핵유 기타	325,120	229,790	338,031	560,811	671,960	2.0	19.8	19.9
7	마가린 기타	351,617	384,975	352,442	497,889	633,851	1.9	27.3	15.9
8	빵 기타	484,115	457,738	330,368	506,095	618,276	1.8	22.2	6.3
9	코코아 버터	390,904	613,366	599,335	604,874	615,039	1.8	1.7	12.0
10	맥아 추출물 기타	445,225	511,283	512,130	544,668	611,630	1.8	12.3	8.3

* 주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 Map(www.trademap.org)

- 2022년 농식품 수입액은 227억 7,660만 4,000달러(한화 약 29조 8,374억 원)로 전년 대비 14.0%, 연평균 9.8%로 증가함
  - 주요 수입국은 인도네시아(14.6%), 중국(9.3%), 태국(8.8%)이며,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 비중은 0.8%에 불과함
    * 인도네시아산 농식품의 수입액이 33억 2,299만 4,000달러(한화 약 4조 3,531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연평균 15.5%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 최근 5년간 연평균 7.8%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기준 21억 2,167만 7,000달러(한화 약 2조 7,794억 원) 규모로 수입됨
    * 태국산 수입액은 전년 대비 20.6%가 증가한 20억 1,494만 6,000달러(한화 약 2조 6,396억 원)로 집계됨
    *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1억 7,272만 2,000달러(한화 약 2,263억 원)로 전년 대비 3.0% 증가하였으며, 2018년 이후 연평균 14.1% 증가세를 보임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15,673,979	15,300,225	16,295,004	19,974,162	22,776,604	100.0	14.0	9.8
1	인도네시아	1,870,252	1,670,017	1,993,205	2,870,120	3,322,994	14.6	15.8	15.5
2	중국	1,570,895	1,642,432	1,919,684	1,923,514	2,121,677	9.3	10.3	7.8
3	태국	1,424,363	1,278,517	1,065,325	1,670,714	2,014,946	8.8	20.6	9.1
4	아르헨티나	1,170,899	1,093,127	1,221,994	1,649,178	1,854,702	8.1	12.5	12.2
5	인도	964,061	883,826	1,158,817	1,461,127	1,747,120	7.7	19.6	16.0
6	호주	997,750	877,014	838,565	1,183,055	1,492,960	6.6	26.2	10.6
7	미국	1,122,583	1,263,157	1,184,325	1,361,844	1,322,845	5.8	−2.9	4.2
8	브라질	887,397	622,756	882,086	1,059,104	1,006,766	4.4	−4.9	3.2
9	뉴질랜드	644,244	627,046	608,745	596,180	818,471	3.6	37.3	6.2
10	싱가포르	618,639	572,401	553,913	696,380	806,331	3.5	15.8	6.8
25	한국	102,023	99,091	119,172	167,766	172,722	0.8	3.0	14.1

* 출처 : ITC Trade Map(www.trademap.org)

- 팜유 기타, 코코아두, 조제식료품, 사탕수수 기타 등의 품목을 주로 수입함
  * 팜유 기타 수입액은 2022년 12억 6,568만 7,000달러(한화 약 1조 6,580억 원)로 집계됨
  * 코코아두는 2022년 10억 6,997만 1,000달러(한화 약 1조 4,017억 원)로 집계되었으며, 코코아버터, 코코아가루 등으로 재가공하여 수출하기 위해 코코아두를 수입하는 것으로 추정됨
  * 조제식료품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5.2% 증가하여 10억 5,457만 9,000달러(한화 약 1조 3,815억 원)로 확인되며, 사탕수수 기타 품목은 전년 대비 0.4% 감소한 8억 998만 3,000달러(한화 약 1조 611억 원)가 수입됨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15,673,979	15,300,225	16,295,004	19,974,162	22,776,604	100.0	14.0	9.8
1	팜유 기타	178,607	92,950	314,755	1,003,413	1,265,687	5.6	26.1	63.2
2	코코아두	788,915	826,877	973,398	1,209,606	1,069,971	4.7	−11.5	7.9
3	조제식료품	651,731	690,382	747,696	1,002,705	1,054,579	4.6	5.2	12.8
4	사탕수수 기타	684,142	567,107	715,789	813,113	809,983	3.6	−0.4	4.3
5	대두유 추출 유박	590,653	521,116	520,347	629,281	783,724	3.4	24.5	7.3
6	옥수수 기타	546,193	477,434	439,574	629,081	680,646	3.0	8.2	5.7
7	냉동 쇠고기	463,574	417,709	466,282	504,102	652,483	2.9	29.4	8.9
8	쌀(정미)	403,678	450,087	581,348	566,099	597,080	2.6	5.5	10.3
9	옥수수 종자용	277,888	310,386	352,030	495,579	580,350	2.5	17.1	20.2
10	밀 기타	307,739	290,855	286,002	331,478	525,065	2.3	58.4	14.3

* 주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 Map(www.trademap.org)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농식품 수출현황

- 한국산 농식품의 對말레이시아 수출액 1억 8,034만 3,000달러(한화 약 2,362억 원)로 전년 대비 0.8% 감소함
  - 농산물 수출액이 전체의 86.7%인 1억 5,636만 1,000달러(한화 약 2,048억 원)로 집계되었으며, 전년 대비 4.5%의 감소세를 기록함
  - 축산물과 임산물 수출 비중은 각각 12.8%와 0.5%이며, 전년 대비 축산물은 33.1% 증가하였고, 임산물은 14.2% 증가함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수출 규모(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114,311	108,976	133,280	181,809	180,343	100.0	−0.8	12.1
농산물	111,385	106,174	122,457	163,668	156,361	86.7	−4.5	8.8
축산물	1,075	1,401	7,826	17,293	23,014	12.8	33.1	115.1
임산물	1,851	1,401	2,997	848	968	0.5	14.2	−15.0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말레이시아로 수출되는 주요 한국산 농식품은 라면(15.3%), 조제식료품 기타(11.4%), 동식물성 유지 기타(6.3%), 옥수수 전분(4.5%) 등임
  * 조제식료품과 옥수수 전분 품목은 전년 대비 수출규모 감소세로 나타남
  * 동식물성 유지 기타는 1,219만 달러(한화 약 160억 원) 수출규모를 보이며 전년 대비 139.2%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수출 상위 5개 품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114,311	108,976	133,280	181,809	180,343	100.0	−0.8	12.1
1	라면	19,655	16,497	19,185	27,713	29,520	15.3	6.5	10.7
2	조제식료품 기타	8,417	12,684	17,346	39,315	22,012	11.4	−44.0	27.2
3	동식물성 유지 기타	4,021	20	3,272	5,095	12,190	6.3	139.2	32.0
4	옥수수 전분	7,552	9,073	8,040	8,639	8,614	4.5	−0.3	3.3
5	기타 소의 지방	–	0	884	5,485	6,393	3.3	16.5	–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3. 통관 및 검역 제도

수출입절차

프로세스	상세내용	주체
할랄인증 취득	• 말레이시아로 육류·유제품을 수출할 경우 할랄인증 취득 필요 •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와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한 (재)한국이슬람교, 한국할랄인증원에서 할랄인증을 취득하는 것을 권장	국내 수출업체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 수출 품목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위생기준, 검역 요건, 포장 및 라벨링 요건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국내 수출업체
수출신고 및 운송수단 선적	•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세관에 제반서류 제출 • 제출서류 : ① 수출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포장명세서 등 • 수출신고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운송수단에 선적 완료	국내 수출업체
수입허가 취득	• 일부 품목의 경우 말레이시아 검역처에서 수입허가 취득 필요 • 대상품목 : 껍질이 있는 달걀, 육류 및 가금육, 쌀, 식물성식품, 동물성 유지	말레이시아 수입업체
식품등록	• 말레이시아 보건부(MOH)의 '식품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식품 등록 필수	말레이시아 수입업체
적하목록 제출	• 운송수단별 제출기한을 준수해 말레이시아 세관에 적하목록 제출 • 제출기한 : 해상운송 – 도착 후 24시간 이내 항공·철도 – 도착 후 요청이 있을 때	말레이시아 수입업체
수입신고	• '다강넷(DagangNet)' 시스템을 통해 세관에 수입신고서 및 제반서류 제출 필요 • 제출서류 : ① 수입신고서 ② 선하증권 ③ 상업송장 ④ 포장명세서 ⑤ 원산지증명서 등	말레이시아 수입업체
수입검사 및 검역	• 제출된 서류에 따라 식품 위험도를 평가하며, 총 6단계로 위험도를 구분함 • 위험도별로 검사내용 상이 • 검사유형 : ① 서류검사 ② 물리적검사 • 식물성 식품 및 동물성 식품은 수입검역 시행 기관이 상이 – ① 식물성 식품 : 말레이시아 농업부(도착 4일 전 검역 신청 필요) – ② 동물성 식품 : 말레이시아 수의검역부(검역 신청 필요)	말레이시아 수입업체
관세 납부 및 반출	• 관세 납부 후 물품 반출 가능	말레이시아 수입업체

통관 및 검역 제도

① 국내 수출통관 절차

▶ 수출 전 준비사항

할랄인증 취득

● 말레이시아로 육류 및 유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수출업체는 사전에 할랄인증 취득 필요

-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로 제반 서류를 제출해 할랄인증을 신청해야 함

할랄인증 취득 제출서류

① 회사소개서	⑪ 포장재의 종류
② 사업자등록증	⑫ 제조 공정도 및 생산 절차
③ 제품명 및 제품설명서	⑬ 샘플 및 제품 라벨
④ 사용된 원료의 시험성적서	⑭ 원재료 리스트
⑤ 공장·부지 지도, 작업장 평면도	⑮ 할랄 실무자 교육 수료증
⑥ 원료 공급업체 및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	
⑦ 식품원료의 할랄 상태. 필수 식품원료의 설명서 또는 할랄 인증서(보유 시)	
⑧ 동물성 원료 및 이슬람 법에 위배되는 소재/공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확인서	
⑨ 제조공정 중 효소를 사용할 경우 사용된 효소의 유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배양액에 대한 원료 리스트, 각 원료의 제조공정도, 균주기탁서	
⑩ 할랄 제품 생산에 관한 자체 규정 자료	

-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현장실사를 진행하며, 필요 시 샘플링을 통해 실험실 분석을 실시함
- 심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 할랄인증이 승인 및 발급됨
-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는 한국 할랄인증원(KHA)과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와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에서 취득한 KHA 인증 및 KMF 인증 역시 말레이시아에서 통용될 수 있음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 수출 품목에 대한 말레이시아 위생 기준·검역 요건·포장 및 라벨링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필요

- 일반 사전포장식품, 신선 농산물, 축산물 제품 등에 요구되는 위생기준·라벨링· 식품첨가물 규정 등 수입요건이 상이하므로, 국내 수출업체는 원활한 수출을 위해 품목별 수입요건을 사전에 파악해야 함
-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육류제품은 할랄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가 인정한 도살장에서 도살된 제품이어야 함

원산지 증명서 발급

● 말레이시아 수출 시 한-아세안 FTA 및 RCEP 협정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필요

- FTA 관세율, RCEP 관세율을 활용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수
- 대한상공회의소 및 세관을 통해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관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한-아세안 FTA 관세율 활용 시 선적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선적 완료 전 발급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국내 수출통관 절차

수출신고

● 수출업체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기반으로 수출신고서 작성 후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수출신고 필수

- 수출신고는 수출업체(화주)와 수출업체를 대신하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완제품 제공자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
- 접수 결과에 따라 ① 서류 심사 후 수리 ② 현품 검사 후 수리 ③ 자동수리로 구분해 수출통관 진행

수출신고 수리 유형

서류 심사 후 수리	실제 신고내용과 수출신고 근거 서류상의 일치 여부 확인
현품 검사 후 수리	우범성이 높은 물품을 대상으로, 수출신고 물품 외 은닉 물품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자동 수리	세관의 심사 없이 자동 수리 후 수출신고필증 발급

- 수출신고 수리 후 수출업체는 '수출신고필증'을 수령함
- 수출업체(화주)는 관세법에 따라 ① 수출신고필증 ② 수출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③ 수출 거래관련 계약서 및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④ 반송신고필증 등을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함

수출검역

● 말레이시아와의 합의된 요건이 있거나,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경우 수출검역 신청 필요

- 말레이시아로 감귤, 곡물류 등을 수출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검역을 신청해야 함
- 수출검역 신청 시 수출검사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함

수출검역 신청 시 제출 서류

식물검역	① 수출식물 검사 신청서
	② 검사대상 식물 명세서(수출검사 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③ 수입허가 증명서(상대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한 경우)
	④ 수출검역 요령에 명시된 수입국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국이 검사증명서에 부기를 요구할 경우)
축산물검역	① 수출 검사 신청서
	② 선적 관련 서류
	③ 수출 상대국 요구사항(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 수출검역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시간에 실시하며,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에 적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함
- 수출검역 결과 합격 시 검역증명서가 교부되며, 불합격 시 신청자가 소독하거나 선별한 후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음

운송수단 선적

● 수출업체는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선박 등 운송수단에 적재 필요

- 단,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 기간 연장이 가능함

② 말레이시아 수입통관 및 검역 절차

▶ 말레이시아 수입통관 및 검역 절차

수입허가 취득	● 말레이시아 수입업체는 품목에 따라 수입허가 취득 필요 - ▲껍질이 있는 달걀 ▲육류 및 가금육 ▲쌀 ▲식물성 제품 ▲동물성 유지 ▲알코올 음료 등을 수입하는 말레이시아 수출업체는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함 - 수입허가증은 말레이시아 검역처(Malaysia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s, MAQIS)에서 발급하며 온라인으로 신청 시 5영업일이 소요됨 - 수입허가는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만 취득할 수 있으며, 수입허가는 3개월간 유효함 - 수입허가증는 해당 품목 수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이 기재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이행 조건은 수출국(생산국)에서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수출업자는 수입업체로부터 수입 요건을 전달받아 파악하는 것이 권장됨
식품 등록	● 말레이시아 수입업체는 말레이시아 보건부에 수입식품 사전등록 완료 필수 -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식품안전정보시스템(Food Safety Information System of Malaysia, FoSIM)에 수입식품 사전등록을 완료해야 함 - FoSIM은 세관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식품 수입 활동을 전산으로 관리함 - 말레이시아 수입식품을 사전등록한 뒤, 화물이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다음 식품에 대한 정보를 FoSIM에 입력하며, 해당 정보를 토대로 식품 위험성에 따라 자동으로 통관되는 Level 1부터, 자동 거절되는 Level 6까지 6가지 단계로 분류됨
적하목록 제출	● 말레이시아 수입업체 및 운송업체는 말레이시아 도착 전 적하목록 제출 - 말레이시아 수입업체는 운송수단별 제출기한을 준수해 적하목록을 말레이시아 세관에 제출해야 함 - 해상운송의 경우 도착 후 24시간 이내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항공·철도 운송의 경우 물품이 도착한 후 세관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해야 함
수입신고	● 말레이시아 수입업체는 세관에 수입신고서와 기타 서류 제출 필요 - 말레이시아의 경우 관세사 제도가 없어 포워딩 업체가 관세사 역할을 함 - 말레이시아의 단일통관창구인 다강넷(Dagang Net) 전자통관 서비스를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하며, 수입신고서(Custom No.1 양식 사용), 선하증권 등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수입신고서에는 ▲상품 정보 ▲포장단위 및 개수 ▲가격 ▲중량 ▲원산지 ▲최종 도착항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말레이시아 수입신고 제출서류

① 수입신고서(Custom No. 1)
② 선하증권(Bill of Landing, 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③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C/I)
④ 포장명세서(Packing List, P/L)
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필요 시)
⑥ 기타 입국 권한 증명에 필요한 문서 등

수입검사 및 검역

● 말레이시아 세관은 수입신고를 신청한 물품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심사

- ① 서류와 물품의 내용(수량, 포장 개수 등) 일치 여부 ② 수입 제한 및 금지 품목 여부 ③ 수입 물품의 용도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심사함

● 말레이시아 검역처(MAQIS)는 식품의 위험도에 따라 수입검사를 진행

-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식품의 위험성을 측정하며, 총 6단계로 구분해 식품 검사 유무 및 통관 여부가 달라짐

말레이시아 위험도별 통관채널 검사 내용

Level 1	수입식품 자동 통관
Level 2	서류검사 후 통관
Level 3	서류검사 및 실험실 분석을 위해 샘플링
Level 4	서류검사, 샘플링 및 샘플링 완료 후 통관
Level 5	서류검사, 샘플링, 및 샘플링 완료 후 검사 결과가 식품법 및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화물 반출
Level 6	수입식품 자동 거절

- 물리검사가 시행되는 경우, 수입된 제품이 다음의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사함

물리적 검사 사항

① 해충, 질병 혹은 오염 물질을 포함 여부
② 포장, 등급 표시, 라벨 부착 여부
③ 제품 종류, 수량 등의 서류상 일치 여부
④ 사전처리 및 검역 진행 여부
⑤ 축산제품의 경우 할랄인증 취득 여부

- 검사 결과 안전하지 않은 제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입 식품은 압수되어 폐기됨

● 식물성 제품의 경우 말레이시아 농업부에서 검역을 진행

- 말레이시아 수입업체는 검역소 도착 4일 전 다강넷을 통해 수입검역을 신청해야 함
- 식물성 제품의 경우, 검역 신청 시 수입허가서(AP), 식물위생증명서, 해충검역검사 및 식물위생 규제 준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 표본검사가 시행되며, 검역기간은 최대 5일이 소요됨
- 말레이시아 수입업체는 농업부에 검역 비용(15링깃)을 납부하며, 검역이 승인될 경우 세관에 자동으로 통지됨

● 동물성 제품의 경우 말레이시아 수의검역부에서 검역을 진행

- 말레이시아 수입업체는 온라인(e-Permit)이나 서면(Form A 양식)으로 수의검역부에 검역 신청서와 검역 비용을 납부해야 함
- 동물성 제품의 경우, 검역 신청 시 수입허가서(AP), 할랄(HALAL) 인증서, 수의검역부(DVS) 허가증, 육류 및 가금류 수출증서(FSIS Form 9060-5)를 제출해야 함
- 검역 승인 후 동물건강증명서가 발행되며, 승인 내역과 증명서는 세관에 자동으로 통지됨

● 가공식품의 경우 별도로 진행되는 검역 절차는 없음

- 검역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말레이시아 검역처에서 식품첨가물 검사 등 식품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함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 말레이시아 수입업체는 관세 및 기타 제세를 납부하고 물품 반출 - 수입품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 기준은 대부분 20~30%의 종가세를 적용하나 품목에 따라 종량세를 부과하기도 함 -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국 제조 산업의 육성을 위해 농산품, 담배, 음료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수입 통관 시 수입 관세를 납부하고 판매세 및 소비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맥주, 포도주, 알코올 제품에는 20%의 소비세가 부과되며, 품목별 판매세, 100㎖당 5g 이상의 설탕을 함유한 음료 및 설탕 및 향료가 첨가된 청량음료에 부과되는 설탕세 등을 납부해야 함 - 제조업체가 직접 제조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이 취급하지 않는 소재, 부품, 포장 소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 관세를 면제함

FTA 체결현황

말레이시아의 FTA 체결현황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ASEAN 전체차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AFTA, 일본, 파키스탄, 인도, 뉴질랜드, 칠레, 호주, 튀르키예, CPTPP, RECP (ASEAN) (발효 및 서명) 중국, 일본, 홍콩, 한국, 인도, 호주·뉴질랜드, 홍콩, RCEP	EU	해당사항 없음

* 주 : 2023.10. 조회 기준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현황

발효	서명/타결	협상중	재개개시 여건조성
한-ASEAN FTA RCEP	해당사항 없음	한-말레이시아 FTA	해당사항 없음

* 주 : 2023.11. 조회 기준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3)]

1. 수출 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물류 : 쌀(백미, 현미, 흑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실류 : 감(단감), 밤, 참다래, 유자,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망고, 자두
  * 감귤의 경우,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란에 ① 수입허가서 번호, ② 감귤그린병(Citrus greening) 및 과실파리(Fruit fly) 무감염 사항 기재
- 특작류 : 인삼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양파, 쑥갓, 아욱, 마늘
- 종자류 : 가지, 고추, 당근, 무, 멜론, 브로콜리, 배추, 상추, 수박,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 버섯류 : 느타리, 만가닥, 송이, 새송이, 양송이, 영지, 표고, 팽이
- 절화류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심비디움, 장미, 카네이션, 튤립, 팔레놉시스
- 화훼류 기타(재배매체 포함) :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선인장(접목선인장), 심비디움, 장미, 철쭉속, 카네이션, 튤립

• 축산물

- 개사료
  * 개사료 수출 시 검역시행장 지정 및 검역증명서 부속서 필요
- 우유 및 유가공품
  * 우유 및 유가공품 수출 시 수출작업장 등록 필요
  * 말레이시아 우유 및 유가공품 수입규정에 따른 위생검역과 할랄인증 조건 등의 충족여부 확인
  * 검역본부 검역증명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증명서 발급 필요
- 소 정액
  * 수출 조건 : 정부 승인 받은 인공수정 센터에서 수출 가능, 정액 추출 후 6개월 간 인공수정 센터에서 보관, 수출 전 12개월 간 특정 질병 발생 없어야 함, 종모우의 경우 실험실 검사를 통한 특정 질병 발생 없음을 확인 필요

3) 농산물 수출 검역 조건_농림축산검역본부(2023), https://www.qia.go.kr/listWebQia3WGJYYQ.do?clear=1

- 말

* 대 말레이시아 수출 말의 주요 검역 증명 요건 : 우리나라 2년 질병(African Horse Sickness, Venezuelan, Eastern and western, St. Louis Equine encephalomyelitis, Hendra Virus, Glanders, Equine Influenza and Equind Viral Arteritis) 비발생, 선적 전 2년 간 비저(Glanders) 비발생 또는 선적 30일 전 혈청검사(CFT) 검사 결과, 선적 전 3개월 동안 Equine encephalomyelitis(Venezuelan, Eastern and western, St. Louis Equine encephalomyelitis) 임상증상이 없을 것 등

- 쇠고기

* 국내산 쇠고기의 대 말레이시아 수출 검역 조건 :

1.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수입 허가(업체)를 받음
2. 말레이시아 수의검역부 및 이슬람개발부에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3. 검역시행장 지정 필요 :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검역시행장 지정·등록 신청서 제출
4.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 2022년 6월 기준, 위생조건에 따라 냉동 쇠고기만 수출 가능

* 럼피스킨 질병 발생(23.10.19~)과 관련하여 과거 12개월 간 농장 비발생 조건 준수하여야 함

- 멸균 돈육 가공품

* 가공장 : 말레이시아 수의검역부 측에 수출작업장 등록 필요

* 원료육 : 1) 국내산 돈육을 사용하는 경우, 도축장을 수출작업장 등록 필요, 2) 수입산 돈육을 사용하는 경우, ASF 비발생국의 수의검역부 승인 도축장 유래여야 함

* 열처리 : 멸균조건 F0 value 3 이상(121℃ 4분 유지)

2. 수출 불가능 품목

• 농산물 * 주요 신선 · 건조 농산물 중 수출금지 품목 없음

- 감귤 묘목, 국화묘, 옥수수종자, 딸기묘목

축산물 품목별 수출 가능 여부 확인 방법

• 축산물 품목별 수출 요건

- 각 나라마다 축산물의 수입에는 국가에서 정한 위생 조건이 있음
- 수출 제품에 대한 수출증명양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으므로, 반드시 수출 전 해당 국가의 요구 조건을 확인하여야 함

• 검색 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https://www.qia.go.kr) 사이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검역 〉 수출축산물검역 〉 품목별수출요건 〉 DB검색)
- 국가명과 품목을 검색하여 수출 가능 여부 확인 가능

1. 농림축산 검역본부 사이트	2.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 검역	3. 수출축산물검역 〉 품목별 수출 요건 〉 DB 검색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Komart
업체 유형	한인마트
담당자명	Mr. Kim

- 현지 국가에서 인기 있거나 수출 가능성이 있는 한국산 농식품
  - 한국산 신선식품 중 팽이버섯, 배추, 무, 깻잎, 버섯, 양배추, 고추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으며 특히 최근 한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들깻잎과 버섯을 많이 구매하고 무김치를 집에서 담그기도 함
  - 한국산 과일 중 레드키위와 골드키위 등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열대과일은 특유의 독특한 맛과 달콤한 맛, 영양성분으로 인기를 얻고 있음
  - 한국산 수입 가공식품 중에서는 라면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식사 준비의 신속성과 편리성이 높은 수요의 이유로 꼽힘

- 수입 시 애로사항
  - 농산물 수입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과 수입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임. 규정 준수는 물류 관리 및 공급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함
  - 말레이시아는 육류에 대한 추적성 표준, 해산물에 대한 해충 및 질병 검사가 엄격하여 수입업체들은 육류와 해산물을 수입할 때 어려움에 직면함. 적절한 인증 및 취급 프로토콜을 통해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다른 품목에 비해 조금 더 까다로운 편임
  - 말레이시아 정부는 식품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수입품 입국 지점에서 검사를 거쳐 표준 이하 물품의 통관을 거부함. 최근에는 식중독 관련 사례가 없으나, 과거 샐러드나 허브 등 수입 잎채소 관련 식중독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함

- 말레이시아로 수출 시 유의해야할 점
  - 말레이시아 내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한국 식품 전망이 매우 긍정적임. 한국 식품 수출업체는 식품 안전 표준을 준수하여 말레이시아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식품 안전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품질과 안전 보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03 비관세장벽 현황

1. SPS

주요 SPS 내용

- 말레이시아는 신선 베텔잎, 신선 고추, 신선 두리안 수입 시 신규 수입요건을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 유전자변형작물은 오직 식품 및 사료용, 가공용으로 사용될 때만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판매가 허가됨. 말레이시아는 소량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와 대두가 판매를 허가했으며, 2013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가공식품을 포함해 새로운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라벨 지침을 발표하였으나 아직 실효되지는 않음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잔류농약 허용치	식품 규정 1985에 따른 부칙	http://fsq.moh.gov.my/v6/xs/page.php?id=72
식품 첨가물 허용치	식품 규정 1985에 따른 부칙	http://fsq.moh.gov.my/v6/xs/page.php?id=72
유전자 변형 식품 라벨 지침	식품 라벨링 지침	http://fsq.moh.gov.my/v6/xs/page.php?id=441000080

통보문 개정현황(2023년)

- 개정사항 없음

2. TBT

주요 TBT 내용

- 광천수(HS코드 2201201000), 탄산수(2201102000) 등과 같은 품목에 대하여 총 용존 고형물(Total Dissolved Solids) 최소 수준을 50mg/l로 설정하는 규정 신설[4)]

  * 식품규정 1985 [P.U.(A) 437/85]의 규정 360A 개정

- 2021년 7월, 천연 광천수에 대한 국제식품규격에 부합하도록 천연 광천수 포장의 불소 함량에 대한 조건부 라벨링 요구사항에 새로운 단락 삽입

  * 1985년 식품 규정[P.U.(A) 437/1985]의 하위 규정 360A(11) 개정

- 2021년 6월, 건조중량 기준으로 100g당 6.0mg 이상의 철(푸마르산제일철) 및 260μg 이상의 엽산을 함유해야 하는 1kg 이하로 포장된 밀가루에 관한 새로운 하위규정(4A) 삽입

  - "저트랜스지방산"과 그 조건에 대한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를 삭제하고 "무트랜스지방산"과 그 조건에 대한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를 삽입하여 제5차 부속서 A의 표 1을 개정함

    * 1985년 식품규정[P.U.(A) 437/1985]의 규정 43 개정

- 2021년 6월, 판매용 식품을 포함한 모든 포장의 성분 목록에 추가된 물을 표시하는 요구사항 삽입

  * 1985년 식품규정[P.U.(A) 437/1985]의 제11(1)(e)호에 명시된 라벨링 요구사항 개정

- 2021년 6월, 칼륨 및 토코트리에놀이 풍부한 분획(TRF)에 대한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에 요구되는 최소량 삽입

  * 1985년 식품규정[P.U.(A) 437/1985]의 제5차 부속서 A의 표 3 개정

- 2022년 10월, 알코올 함량, 다른 성분 추가, 식품 첨가물 사용 및 라벨 요구사항에 관련된 알코올음료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 개정

---

4) 2024년 1월 1일부터 본 규정에서 식품첨가물 라벨링, 영양 성분표시 및 강조표시 등을 개정한 식품 규정(개정) (No.4) 2020 [P.U.(A) 209]이 시행될 예정임

• 2023년 10월, 유아용·어린이용 조제분유 등 일부 부칙 개정

- 유아용 조제분유, 성장기 조제분유 및 어린이용 조제분유에서 1:2의 비율로 락토-N-네오테트라오스(LNnT)를 60mg/100ml, 2-푸코실락토오스(2-FL)를 120mg/100ml의 농도로, LNnT의 선택적 사용을 허용함

  * 어린이용 조제분유에서 60mg/100ml의 최대 농도로(조리된 형태), 허용된 선택적 성분으로 락토-N-네오테트라오스(LNnT)

• 2023년 10월, 영양소 함량 관련 부칙 표 개정

- 도코사헥사에노산(DHA) 함량, 아라키돈산(ARA) 최소 함량 등 개정

  * 개정 사항 : 영양소 표시 사용을 위한 영양소 함량 조건 관련 다섯 번째 A 부칙의 표 II, 기타 기능 표시 조건에 관한 다섯 번째 A 부칙의 표 IV, 첨가된 영양소와 관련된 표시 조건에 관한 다섯 번째 A 부칙의 표 V 개정

•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라벨링 규정	말레이시아 식품안전품질본부	http://fsq.moh.gov.my/v6/xs/page.php?id=441000080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항목)	• 제품명 • 용량 • 성분	• 제조사 및 수입업체 • 원산지 • 영양성분	• 유통기한 • 기타 정보 및 금지사항 • 할랄 관련 사항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표기 언어	• 말레이시아에서 생산/제조/포장하는 경우 말레이시아어로 표기하며, 다른 언어를 함께 적을 수 있음	
		• 수입식품은 말레이시아어 또는 영어로 표기하며 다른 언어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음	
	제품명	• 제품의 명칭은 원재료의 일반 명칭 또는 학명으로 표기해야 함	
	용량	• 순중량 또는 부피 또는 내용물의 수로 표기해야 함	
	성분	• 중량에 따른 내림차순으로 기재되어야 함	
		•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함유한 경우 해당 내용을 표시해야 함	
		• 돼지고기/돼지기름 또는 알코올을 함유한 경우 '돼지고기 함유' 또는 '알코올 함유'로 표시해야 함	
		• 식품에 식용지망, 식용유 또는 둘 다 포함하는 경우, 동물성인지 식물성인지, 기름이 어디에서 유래 된 것인지 표시해야 함	
	제조사 및 수입업체	• 제조사 또는 수입업체의 주소, 연락처, 정보를 기재해야 함	
	원산지	• 제조사 또는 수입업체의 정보와 함께 원산지 정보도 기재해야 함	
	영양성분	• 영양성분은 100g(ml) 당 및 1회 제공분에 대한 형태로 표기해야 함	
		•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및 지방은 필수로 표기해야 함	
		• 다음 식품은 영양 식품을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함 – 조리된 시리얼과 빵 – 밀가루 과자 – 통조림 고기, 생선, 야채 – 통조림 과일 및 다양한 과일 주스, – 샐러드 드레싱 및 마요네즈 – 청량음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 갑각류 및 조개류, 계란, 생선, 우유, 땅콩, 간장, 견과류, 글루텐, 아황산염	
	유통기한	• 유통기한은 '일/월/년' 또는 '월/년' 순으로 표기해야 함	
		• 유통기한의 글자 크기는 6포인트 이상이어야 함	
	기타	• 식품 요소의 그림은 라벨에만 기재함	
		• 섭취 방법을 기재할 경우 'SERVING SUGESTION'또는 'RECIPE'라고 대문자로 글자 크기 6포인트 이상으로 제품이미지와 가깝게 표기	
		• 로고는 관할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인증이어야 하며,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만료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라벨 기본 요건	• 라벨 표시 및 광고는 샤리아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샤리아 법에 위배되는 음란함을 강조해서는 안됨
		• 품질에 관한 문구는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
		• 모든 라벨은 추가적인포장 위에 덧붙여 있어야 함
	할랄 관련 사항	• 할랄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제품 라벨에 말레이시아 할랄 로고를 표기할 수 있음
		• 포장재는 나지스(Najis)로 분류되는 재료로 만들어서는 안됨
	금지사항	• 관련 기관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르지 않는 한 등급, 품질, 우수성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표기할 수 없음
		• 규정에 따른 강도, 순도, 품질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제외하면 "순수한(pure)" 또는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할 수 없음
		• 합성(compounded), 약물첨가(medicated), 강장(tonic), 건강(health)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가 있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음
		• 다음의 부재에 대해 표기할 수 있음 – 쇠고기, 돼지고기, 부산물, 라드, 첨가된 알코올이 첨가되지 않은 경우 – 본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첨가물 또는 영양보충제
		• 다음의 표기는 금지 – 특정 식품이 모든 필수 영양소를 적절하게 공급하는 공급원이라는 내용 – 균형 잡힌 식단이나 다양한 음식의 섭취가 모든 영양소를 적절히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 – 입증할 수 없는 내용 – 식품이 질병, 장애 또는 다른 생리학적 기능을 예방, 완화, 치료 또는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 – 소비자가 유사 제품의 안전성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 – 소비자의 두려움을 유발하거나 이용하는 내용
		• 유기농의(organic), 효소가 함유된(biological), 환경친화적인(ecological), 생체역학의(biodynamic) 또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는 관련 규정인 Malaysian Standard MS 1529를 준수한 식품의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음
		– 해당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특별 식이요법(special dietary)"이라는 단어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타 용어 – "통곡물(wholegrain)" 또는 "통밀(wholemeal)"이라는 단어(단. 식품에 다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a. 밀가루, 쌀가루, 쌀 또는 곡물의 경우 통곡물 또는 통밀 100% b. 빵의 경우, 통곡물 또는 통밀 60% 이상 c. 기타 제품의 경우, 1회 제공량당 통곡물 또는 통밀 25% 또는 8g 이상

* 자료 : 말레이시아 보건부(MOH)

• 비건 냉동만두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올그루 야채 군만두
원재료명	밀가루 36%, 두부, 양파 11%, 대파 10%, 부추 7%, 대두단백, 옥수수유, 당면, 무말랭이 2%, 옥수수전분, 마늘, 소금, 설탕, 생강, 참기름, 후춧가루, 글루타민산나트륨, 유화유
내용량	540g(18 x 30g)
저장방법	냉장보관 : 1일 냉동(~6℃) : 일주일 냉동(-2℃) : 한달 냉동(-18℃) : 전면 별도 표시일까지
유통기한	전면 별도 표시일까지
알레르겐 주의 성분	대두단백, 글루타민산나트륨
제조사	GMF CO., LTD.
수입자	Kreyenhop & Kluge GmbH & Co. KG
영양성분 정보	1회 제공량 100g

열량(Kcal)	706kJ / 168kcal
지방	5.6g
포화지방	2.0g
탄수화물	26.0g
당류	2.4g
식이섬유	1.8g
단백질	5.6g
나트륨	0.5g

• 떡볶이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츄릅떡볶이
원재료명	떡(쌀 99%), 소금(0.99%), 산도조절제(E330)(0.01%), 시즈닝 : 백설탕, 고춧가루, 소금, 말토덱스트린, 양파분말, 표고버섯분말, 식물성크림(옥수수시럽, 유청분말, 유당,우유크림, 코코넛오일, 백설탕, 카제인나트륨, 레시틴, 카라기난), 파 분말, 글루타민산나트륨(E621), 간장가루(콩), 올레오레진 파프리카, 마늘분말, 생강분말, 후추분말, 구연산(E330)
내용량	떡 140g, 소스 20g
출시일(발행일)	2022. 01. 14
저장방법	서늘한 곳에 보관
제조사	Boon Lee Food Industries
알레르겐 주의 성분 및 첨가물	콩, 코코넛, 밀, 우유, 식품 컨디셔너로 허용된 산도 조절제, 유화제, 향미 증강제 및 향산화제를 포함함
영양성분 정보	제공량 140g 당

열량(Kcal)	370kcal
지방	7g
포화지방	2g
트랜스지방	0g
총콜레스테롤	72g
나트륨	660mg
식이섬유	2g
총당분	7g
단백질	7g
비타민D	0 mcg
칼슘	15mg
철분	2mg
칼륨	140mg

제조사	OKI Restaurant System Co.,LTD

인증

[필수 인증]

• JAKIM 할랄 인증

- 말레이시아는 인구 60%이상이 무슬림인 거대 할랄 시장이며, 무슬림 인구의 올바른 할랄 식품 섭취를 위해서 인증을 도입함. 육류 및 육류기반의 제품은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이외 식품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임. JAKIM 할랄 인증 신청 대상자로는 제조업체, 포장업체, 도축업장, 물류업체 등이 있으며 인증대상으로 모든 식품 가공 산업뿐만 아니라 도축장이나 식당·연회 서비스업체까지도 적용됨.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슬람율법과 관련사항에 대한 말레이시아 지침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말레이시아 영토 내에서 유통되는 할랄 제품들은 JAKIM 할랄 인증 또는 JAKIM과 교차 인정되는 할랄 인증마크만 부착할 수 있음. JAKIM 할랄 인증과 교차인정이 가능한 외국 할랄 인증기관은 약 40개국 70여 개 이상이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의 할랄 인증도 해당됨. 교차인정이 가능함에도 말레이시아 무슬림 소비자들에게는 JAKIM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마케팅의 일환으로 JAKIM의 할랄 인증을 직접 받는 경우가 다수 있음

인증명	JAKIM 할랄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JAKIM(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	
강제유무	필수(육류 제품), 권장(기타 식품)	
제출 서류	• 회사명, 사업자등록증, 제품명과 제품설명 등 기본 정보 • 식품원료의 할랄 상태, 식품원료 설명서 또는 할랄 인증서(있는 경우) • 제조과정 순서도와 생산 절차 • HACCP, ISO, GHP, GMP, TQM 등과 같은 다른 인증서 • 육류 및 육류 기반 제품용 말레이시아 수의국의 수입허가서 사본 • 도축장을 위한 수의국 발급 수의학 건강증명서(VHC) • 기간이 만료된 할랄 인증서 사본(있는 경우)	
비용	약 250만~1,500만 원	
소요기간	4~6개월	
절차	신청 및 서류 제출 → 수수료 청구서 발송 및 납부 → 현장실사 및 샘플링 분석 → 심사 보고서 작성 → 인증서 승인 및 발급	

[선택 인증]

• SIRIM 인증

- SIRIM 인증은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유통하고자 하는 제품이 말레이시아 표준 또는 국제규격에 부합함을 인증기관인 SIRIM을 통해 확인받은 것을 의미함. SIRIM 인증은 제품 품질 및 안전이 입증 제품만 말레이시아 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인증으로, 임의인증이 원칙이며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법령으로 정하는 일부 품목만 의무인증 대상임. 식품의 경우 임의인증 품목에 해당되며 말레이시아 내 표준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증이 가능함. 단,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직접 규정을 제시하여 인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인증 발급은 자발적이지만, 일부 품목(설탕, 밀가루, 칠리소스, 인스턴트 면류 등 가공식품 일부)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수출 시 의무적으로 SIRIM 마크를 획득해야 함

인증명	SIRIM 인증	MS SIRIM
인증기관	말레이시아 표준산업연구원 (SIRIM, Standards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	
시험 및 인증대행기관	SIRIM QAS International Bhd	
강제유무	필수 인증(일부 품목)	
제출 서류	인증 질의서(Questionnaire) 및 신청서, 관계당국의 승인 문서, 상표 및 제품명에 관한 승인서, 제조업체 정보	
비용	건당 2,500링깃 이상	
소요기간	약 2개월 이상	
절차	인증 문의 → 인증 신청 → 서류 심사 → 현장실사 →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인증서 발급	

04 수출 애로사항

No.	제목	식품 할랄인증 취득 필요	해당국가	말레이시아
1			관련품목	식품전반
			유형*	TBT
주요 내용		• 말레이시아는 육류 및 육류 기반의 제품은 할랄인증 필수 취득을 요구하며, 그 외 식품은 권고사항임 – 적용 품목 : 음식, 음료뿐만 아니라 음식과 음료를 이루는 기초원료, 부자재 등 이슬람 율법 하에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 식품·음료류, 농·축·해산물류, 첨가제, 향신료, 식품 가공 보조제, 원재료류 • 할랄 인증 신청 절차 ① 온라인 신청 – 로컬 : http://apps.halal.gov.my/myehalal/pemohon/ – 해외 : http://apps.halal.gov.my/international/e-halal.php?new= ② 서류 제출 – 온라인 등록 후 5일 이내 ③ 수수료 청구서 발송 – 서류에 이상 없을 시 1~5 영업일 이내 ④ 수수료 납입 – 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 ⑤ 현장실사 및 샘플링 분석 – 서류 제출 후 30일 이내 ⑥ 인증서 승인 ⑦ 인증서 발급 – 승인 후 5 영업일 이내 • 할랄 인증 취득을 위한 구비 서류 : 회사소개서, 법인등록사본, 인증제품 소개서, 원료 목록, 재료 공급업체 및 제조업체 이름과 주소, 제품에 사용되는 생산 원료에 대한 할랄 인증 사본, 포장 재질 종류, 제품제조 공정 및 절차, 타 인증서(HACCP, ISO, GMP), 공장 및 부지 지도 – 한국 KMF, KHA, 카자흐스탄 AHIK 인증에 대한 상호동등성 인정		
애로·건의 사항		• 무슬림 인구가 60%를 차지하는 국가로, 할랄인증 취득 준비가 필요함		
기타		–		

No.	제목	쌀 반입의 어려움	해당국가	말레이시아
2			관련품목	쌀
			유형*	수입통관
주요 내용		• 말레이시아는 자국 농민 보호와 쌀의 적정가격 수준 유지를 위해 수량 제한(쿼터 제도)을 시행하고 있음 [사례] 2017년, 충남 서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농협쌀 수출 쿼터 1,000톤을 확보하고 수출을 진행한 바 있음 • 말레이시아로 쌀 수출 시, 수입업체는 농림부로부터 수입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입허가서에 수입 품목과 수입량이 표시되어야 함. 또한, 수입품목의 관리방법, 초과분에 대한 신고, 수출업체들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 요구사항을 기입해야 함 • 아세안(ASEAN)의 공동유효관세조약(CEPT)에 의한 쌀 수입관세는 20%, WTO 농업협정(AoA)에 의한 수입 관세는 40%이나, 대한민국은 아세안 FTA(AKFTA)에 의거 수입 관세는 면제됨		
애로·건의 사항		말레이시아로 쌀 반입 시 어려움이 있음		
기타		-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1. 콜라겐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식품 분류 기준 및 전성분 조사 의뢰

제품 사전검토 결과

• 식품, 의약품 분류 프로세스
- 제품 제형 : 제품이 말레이시아 식품 제외 목록의 물질/성분 포함 여부
- 제품 효능 : 제품이 의약품 목적으로 표시된 문장이나 라벨에 명시되었는지 여부
- 제품 형태 : 제품 패키징에 약용 목적 여부 및 의약품 포장 유사성 여부

• 일반 식품 분류 기준
- 100% 식품 성분으로 구성
- 설탕과 크리머가 포함된 즉석 음료 제품(프리믹스 커피, 차, 초콜릿, 콩, 시리얼 등)
- 육류 에센스 제품(액체)(닭고기 에센스, 타조 에센스, 오리 에센스, 생선 에센스 등)
- 응원 팩 / 캔 / 포장 음료에 투약 지침이 없는 즉석 음료 제품(음료)
- 권장 희석 비율이 적합한 제품(대추, 포도 등)
- 식초 제품(분말 및 액체)(사과 식초, 대추 식포 등)
- 꿀 제품(분말 및 액체)
- 등장성 음료 제품, 스포츠 영양 제품 및 특수 목적 식품
- 전통적인 식품 형태의 제품(비스킷, 케이크, 과자, 캔디, 젤리 등)
- 요리 및 식품 준비에 사용되는 제품(식용유, 허브, 향신료 등)
- 의약/건강 강조 표시가 없는 원유 형태의 허브 및 향신료

• 건강식품 분류 기준

- 첨가제 유무에 관계 없이 활성 성분을 함유하는 제품
- 높은 약리학적 또는 치료적 효능을 지닌 특정 활성 성분을 함유한 제품
- 다음과 같은 용량의 관련 치료 효능을 지닌 특정 활성 성분을 함유한 제품
  * 하루에 3.5g 이상 소비되는 식물성 스테롤/스타놀 및 에스테르
  * 하루에 3.5g 이상 소비되는 차전자피
  * 센나가 0.5g 이상 함유된 제품
- 연질 젤, 캡슐 또는 정제(직접 삼키는 것), 설하, 협측, 입에 분무하는 등의 의약품 투여 형태의 제품

자문 결과

• 성분 및 분류 검토 결과

- 배합원료표와 말레이시아 식약청 불포함 리스트를 비교하였을 때 히알루론산, 클루타치온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지 않을 확률이 있음
- 말레이시아 식약청 NPRA에서는 일반식품/건강식품/의약품 등의 Class 분류를 하여 분류 승인 레터를 발부하며, 현지에서 서류 제출 시 4주 이내에 나옴

• 분류 승인레터 예시

DOKUMEN INI BUKAN KELULUSAN KEMENTERIAN KESIHATAN MALAYSIA (KKM) DAN TIDAK BOLEH DIGUNAKAN UNTUK TUJUAN IKLAN

No siri permohonan: 251121/10/099

PDS CONSULTING SDN BHD
A802, Jalan Selaman 1/1,
Dataran Palma, 68000 Ampang,
Selangor.

Tuan/Puan,

PENGKELASAN PRODUK
Nama Produk: **PORORO'S I VITA C CANDY 250 PILL (CANDY)**

Permohonan pengkelasan bagi produk di atas adalah dirujuk.

2. Berdasarkan maklumat yang dikemukakan semasa permohonan pengkelasan, produk di atas merupakan produk yang **TIDAK DIKAWAL** oleh Pihak Berkuasa Kawalan Dadah (PBKD).

3. Pihak tuan/puan perlu mematuhi Akta Makanan 1983 dan Peraturan-Peraturan Makanan 1985 termasuk keperluan pelabelan makanan yang ditetapkan. Pihak tuan/puan adalah dinasihatkan untuk merujuk kepada Bahagian Keselamatan dan Kualiti Makanan di alamat berikut :

Bahagian Keselamatan dan Kualiti Makanan
Kementerian Kesihatan Malaysia
Aras 4, Menara Prisma,
No. 26, Jalan Persiaran Perdana, Presint 3,
Pusat Pentadbiran Kerajaan Persekutuan,
62675 Wilayah Persekutuan Putrajaya, Malaysia.
Tel: 03-8885 0797
Faks: 03-8885 0790
(http://www.fsq.moh.gov.my)

4. Sila ambil maklum bahawa maklumat ini dinilai berdasarkan kepada data yang dikemukakan oleh pihak tuan semasa permohonan pengkelasan dan HANYA untuk tujuan pengkelasan sahaja.

2. 분유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분유 수입을 위한 통관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

분유 통관 절차

- 말레이시아는 유제품 수입 시 할랄 인증 등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으며, 시장 라벨링 마케팅 등에 대한 규제가 강함
- ① 말레이시아 Food Act 중 분유 성분 검토 → ② 말레이시아 수의학 서비스부(DVS) 수입허가 신청 및 할랄 인증 → ③ 조제분유 라벨링 및 마케팅 규정 준수 → ④ 통관 및 검역

• 말레이시아 Food Act 중 분유 성분 검토

- 유아용(12개월~9세) 조제분유는 젖소 또는 다른 동물의 젖으로 제조하는 것으로 어린이에게 적합한 것으로 입증된 동물 또는 식물 기원 다른 성분을 활용한 것
- 유아용 조제분유는 다음을 함유하여야 함
  * 규정에 명시된 양 이상의 영양소
  * 100g 당 11.2g 이상 100g 당 25g 이하의 지방
  * 100g 당 7g 이상의 우유 단백질
  * 코코아, 벌꿀, 옥수수, 콩, 곡물 및 과일을 포함한 다른 적절한 물질을 함유할 수 있음
  * 자당, 포도당, 과당 및 액상 포도당을 감미료로서 첨가할 수 있으며 유아용 조제분유의 총 자당 함유량은 100g 당 12g을 초과해서는 안 됨. 유아용 향료 첨가의 경우, 총 자당 함유량은 100g 당 20g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 식품개량제, 향료, 착색료 함유 가능
  * 우유분말 100g 당 20mg을 초과하지 않는 혼합된 토코페롤 농축액이나 단독 또는 혼합된 토코페롤 함유
  * 비타민 C로서 100g의 우유분말 당 33mg를 초과하지 않는 단독 또는 혼합된 L-아스코빌 팔미테이트, 비타민 C 및 나트륨 또는 칼슘염
- 영아용 조제분유는 다음을 함유하여야 함
  * 영아용 조제분유는 유아의 수유를 위해 모유에 대한 대안으로 설명되거나 판매되는 식품으로 영아용 조제분유는 수산물과 유아 수유에 적합한 식물을 포함하여 소젖이나 다른 동물 또는 동물의 다른 식용 성분이나 두 가지 모두로부터 제조된 가공품임
  * 영아용 조제분유의 뉴클레오티드의 총 농도는 100kcal 당 5mg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 총 지방 함량의 1%를 초과하지 않는 트랜스지방산
  * 총 지방 함량의 1%를 초과하지 않는 에루스산
  * n-3 Lc-PUFA의 총 지방함량의 1%를 초과하지 않고 n-6 LC-PUFA의 총 지방함량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고도 불포화 지방산 함유 가능

• 말레이시아 수의학 서비스부(DVS) 수입허가 신청 및 할랄인증

- 분유 제품을 말레이시아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DVS 유제품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함. 진행 시에는 DS 수입허가 및 할랄 인증 여부가 함께 진행됨
- 말레이시아 농업 및 농업 산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AgroBased Industry) 내의 수의학 서비스부(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 DVS)는2018년 3월 31일부터 수입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시설 및 제품 등록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이 조치에 따라 유제품 등록 시 외국 생산자 및 수출자는 유제품 수입 화물에 대한 수입 허가를 받기 전에 DVS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2014년도부터 말레이시아 유제품 수입에 대한 규정을 DVS에서 발표하였으며 주요 개정안에는 할랄 인증 도입, 라벨링, 온라인 등록(e-dagang) 시스템 등록 등이 포함됨

• DVS 유제품 등록 절차

- DVS 유제품 제조시설 및 낙농시설 등록을 위한 경우 2가지
  * 말레이시아로 수출 이력이 있는 시설의 경우 신청서에 대한 약 2주 검토 기간 소요
  * 말레이시아에서 수출 이력이 없는 시설의 경우 신청서에 대한 약 3-6개월 검토 기간 소요
- DVS에 시설이 등록되기 전까지는 수업 허가가 발급되지 않음
- 등록된 후에는 E-Dagang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입자 등록, 수입허가를 진행하며 MAQIS를 통해 원산지 검사를 시행함
- 수입자 검토 시 DVS에 등록되어 있는 수입업체인지 확인 필요
- DVS 유제품 등록은 www.dvs.gov.my 웹사이트에서 진행

• 할랄 인증 절차

- 말레이시아 검역본부(DVS)와 JAKIM에 서류로 할랄 인증 신청
- 한국의 유제품 제조업체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수입업체와 사전 수출입 관련 협의 완료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한국의 KMF(Korea Muslim Federation)에 의뢰하여 결과 보고서와 서류 심사 후 승인함
- 한국 현장 실사 : DVS에서 2명, JAKIM에서 1명 총 3명을 한국에 파견하여 한국 현장 실사를 진행하며, 방문기간은 1주일 정도 소요됨
  * 실사 비용은 주로 수입업체에서 부담하며, 체류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제역 허가(Free FMD) 국가에 한하여 현장 실사가 생략되거나 서류만으로 실사가 가능하나, 한국은 Free FMD 비체결 국가임

- 현장실사 결과 심사 후 승인

  * DVS는 검역 관련 관계를 검토하여 승인하며, JAKIM은 할랄 인증 관계를 심사하여 승인 후 말레이시아 농림부 MOA(Ministry of Agriculture)에 승인 신청

  * 농림부 MOA는 DVS와 JAKIM에 승인을 통보함

  * JAKIM은 할랄 인증을, DVS는 검역허가 승인을 수출 및 수입사에 통보

  * 신청 후 서류 심사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정도가 소요됨

• 조제분유 라벨링 및 마케팅 규정 준수

- 말레이시아 보건부 내의 식품안전부서(FSQ, Food Safety Quallity)로부터 수입허가 후 라벨링, 영양성분 등에 관한 Approval Letter을 통해 승인받아야 함
- 라벨링 승인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규제하고 있는 Code of Ethics 2008(for Marketing of Infant foods and related prodcuts)을 관장하는 보건부 내의 Vetting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 Code 번호를 부여받음. 부여받은 코드는 제품 앞면에 표시하여야 함

• 자문 결과

- 현재 말레이시아에 한국 분유를 수출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분유의 제조공장과 제품이 할랄 인증을 반드시 획득해야 함
- 한국의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KMF), 할랄인증원(KHA) 두 개의 기관을 통해 할랄 인증을 받은 후 말레이시아 수입업체에서 말레이시아 수의학 서비스부인 DVS 수출자 제조공정 및 수입자 승인을 받아야 함
- 추후 라벨링 승인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규제하고 있는 Code of Ethics 2008(for Marketing of Infant foods and related products)을 관장하는 보건부 내의 Vetting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 Code 번호를 부여받으셔서 일반적인 수입 통관 절차를 진행
- 전반적인 진행은 수입업체 측에서 FoSIM 및 E-dagang이라는 통관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함
- 영유아 분유의 경우 제조시설 등록과 할랄인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할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 제조시설에서의 투자가 필요하므로 명확한 현지 시장조사 및 바이어와의 협의를 통해 접근해야 함

3. 당귀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말레이시아 내 당귀 수입 및 유통 동향
- 당귀 수입 관련 제도 및 절차

검토 결과

- 품목
  - 당귀
  - 말레이시아에서 사용되고 있는 당귀 관련 HS Code는 1211 90 9900(Plants and parts of plants, fresh, frozen, dried, etc)

- 말레이시아 내 당귀 수입 동향
  - 1위는 중국, 2위는 인도, 3위는 인도네시아
  - 2022년도 기준 총 수입 금액은 176,172,822RM(한화 약 518억 원)으로 추정
  - 한국에서 말레이시아로의 당귀 수출은 2021년도에 발생하였으며, 그 외의 년도에서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말레이시아 내 당귀 유통 현황
  - 말레이시아는 다민족국가로 주로 중국계 사람들이 전통차, 자연요법에 관심이 있어 당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주로 차, 한약재 성분, 의약성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됨
  - 말레이시아에서 유통되고 있는 당귀 규격은 수입업체 및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길이는 5-10cm, 지름 0.5-1.5cm 규격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당귀는 건강식품점, 한약점, 온라인 장터 등에서 폭넓게 판매되고 있음

- 당귀 외 다른 한약재 수출 여부
  - 해당 당귀 유통 매장 담당자와 인터뷰한 결과, 구기자(Dried Goji), 대추(Dried Jujube), 마(Chinese Yam), 만삼(Dang Shen)이 수요 높은 품목으로 파악됨

• 말레이시아 당귀 수입허가 절차

- 당귀는 식물로 분류되어 말레이시아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수입허가 신청을 위해서 수입허가 양식인 Borang PB01을 작성하여 농업부에 제출하면 말레이시아 식품검역부(MAQIS)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입 허가증이 발급됨

• 통관 서류

- 수입 식품 신고 : 말레이시아 세관이 요구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 통관신고서
- 입국권리증명(선하증권)
- 상업송장, 상업송장 발행이 불가능할 경우 견적송장
- 포장명세서
- 원산지 증명이나 분석 등 상품 자격을 결정하는 기타 필요 서류

• 관세

- 한-아세안 FTA가 적용되어 당귀에 적용되는 수입 관세는 없음
- 수입 시 부과세 6~10% 부과

자문 결과

- 현지 약재 유통상에게 문의한 결과,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당귀는 주로 중국과 대만에서 들여오고 있음(90%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
- 허브의 크기 기준은 수입 회사 및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말레이시아산 당귀는 길이가 5-10cm 이상일 때 품질이 좋은 것으로 간주됨. 한국에서는 뿌리가 길이 15cm 이상이고 직경 1-2cm인 제품이 상품성이 좋은 것으로 여겨짐
- 소비자 가격은 60-100RM(한화 약 7,000 ~ 12,000원)으로, 대부분 중국인에게 소비되고 무슬림 인구들의 수요는 비교적 낮음
- 유통상들은 한 가지 품목보다는 다품종을 소량으로 유통해 들여오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당귀 이외의 다른 약재를 함께 준비할 경우 시장진입이 더욱 편리할 것으로 사료됨